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공포 제2025-11호(시행 2026.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규정된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교수 : 장안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정년퇴직한 교수 및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발전에 계속 기여하도록 명예직으로 추대된 사람을 말한다.

2. 겸임교수: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장안대학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 내용에 적합하여 교육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초빙교수 :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특정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장안대학교 또는 외부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장안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임교수 : 교육, 연구, 산업, 과학기술, 경영, 사회, 문화분야 등의 활동이 탁월하여 특정 교육 또는 연구, 문화활동을 수행, 교류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학교발전을 위해 특별히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전일제 근무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단, 무보수 또는 연구비 등 일부 기타 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제3조(임용) ①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따라 특별채용절차를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 단계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하는 등 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시 활용하려는 학과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4조(재임용) ① 비전임교원(명예교수제외)은 1년 단위로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제5조(퇴직)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되지 않는 한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면직) ①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1. 비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2. 재임용 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3. 본 대학교 설립이념에 부합되지 않고, 비전임교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4. 본 대학교 강의 평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평점에 해당되었을 경우
6. 학생 정원의 감소로 폐강 또는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7.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제7조(임용기간 등) 비전임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17조(겸임교원 등)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장 명예교수

제9조(자격) ①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2.13.)

1.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교육, 학문 및 사회에 공적이 크며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사람 중 교육 및 학문 분야에서의 공적이 뛰어나고 퇴직 후에도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추대 및 위촉 절차) ① 명예교수의 위촉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학과장의 추천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2.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신설 2026.2.13.>

1.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
2. 학교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어 총장이 추천하는 경우
-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된 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신설 2026.2.13.>

제10조의2(임기 및 재위촉) ① 명예교수의 최초 위촉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6.2.13.>

② 재위촉 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명예교수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6.2.13.>

제11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에 대한 법적 또는 고용상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개정 2026.2.13.)

② 명예교수는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2.13.)

1. 전공 분야의 강의 (주당 6시간 이내 원칙)
2. 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자문
3. 대학이 요청하는 기타 교육·연구 관련 활동
- ③ 총장은 필요 시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연구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준용)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예교수 관련 세부사항은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의 취지를 준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2.13.>

제3장 겸임교수

제12조(자격) 겸임교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 경력 및 재직과 관련하여 공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동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경력자이며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경력 및 재직과 관련하여 공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프리랜서 포함)
3.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4.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예능계 프리랜서 제외)

제13조(위촉기간) ① 겸임교원은 1년 단위로 위촉하되 「겸임(초빙)교원 재위촉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 ②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재직기간 2년이 초과된 경우라도 학과에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고 재위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재위촉 할 수 있다.
- ③ 당연퇴직자 또는 의원면직자는 당해연도에 본 대학교에서 강사로 위촉될 수 없고, 재위촉평가결과 재위촉 기준 미충족자는 본 대학교에서 강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14조(처우) 겸임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수에 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강사료
2.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정수당

제4장 초빙교수

제15조(자격) ① 초빙교수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 경력 및 재직과 관련하여 공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동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경력자이며 교육, 학생지도, 연구, 산학협력, 대외협력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초빙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3. 교육 등 전문 분야에서 본 대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16조(위촉기간) ① 초빙교원은 1년 단위로 위촉하되 「겸임(초빙)교원 재위촉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 ②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재직기간 2년이 초과된 경우라도 학과에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고 재위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재위촉 할 수 있다.
- ③ 당연퇴직자 또는 의원면직자는 당해연도에 본 대학교에서 강사로 위촉될 수 없고, 재위촉평가결과 재위촉 기준 미충

족자는 본 대학교에서 강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17조(처우) ① 초빙교원등의 보수는 개별 임용계약에 의한다. 다만, 재원 부담기관이 별도로 있는 초빙교원등의 보수는 재원 부담기관과의 협약(의)에 따른다.

② 초빙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처우를 할 수 있다.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로 가입
3. 퇴직금의 지급(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명시)

③ 초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초빙교원 등에게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와 초빙교원 등의 사정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강의를 담당할 경우는 학기)의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제5장 특임교수

제18조(자격) 특임교수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자격이 있고 교육, 연구, 산업, 과학기술, 경영, 사회, 문화분야 등의 활동이 탁월하여 특정 교육 또는 연구, 문화활동 수행, 대외교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임무) ① 특임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학교발전에 관한 자문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사항

제20조(처우) 특임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임교수에 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강사료
2.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정수당

제21조(명칭부여) 특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명칭을 특임교수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임기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 없이 총장이 결정한다.

제6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23조(자격)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사람을 임용한다.

②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 등 교육부 장관이 정

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인정기준에 따라 경력 기준은 완화될 수 있다.

제24조(직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주당 책임시수는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에서 정한 책임 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직임용은 제한하며 그 밖에 복무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처우)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 산정 방식 및 보수는 계약에 의한다.

② 그 밖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26조(임기 및 재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 없이 총장이 결정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